

# 강원특별자치도

## 주의·통보

제 목 신축완공대상 건축물 최초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 소홀

기 관 명 ○○소방서

관 계 부 서 ○○○○○○·○○○○○○·○○○○○○○○

관 련 자 ① ○○소방서 ○○119안전센터(前 ○○소방서 ○○119안전센터) 소방○ ○○○

② ○○소방서 ○○○○○○(前 ○○소방서 ○○119안전센터) 소방○ ○○○

내 용

### 1. 업무 개요

○○소방서(○○○○○○○·○○○○○○○·○○○○○○○○○)에서는 「소방기본법」 제 16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7조(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), 「소방청훈령」 제 404호(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)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 계획 수립·실시 및 지도·감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

「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르면 소방활동 자료조사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의 경계·진압 및 인명구조·구급활동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고 있다. 또한 「같은 규정」 제4조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제5조의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방법 및 제8조<sup>1)</sup>의 대상 및 횟수 등과 소방용수시설·지

1) 제8조(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)

①-1. 화재예방강화지구,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, 특급,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,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: 연 1회 이상

①-2.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년에 1회 이상 ※ 2025. 2. 17. 일부개정 이전 2·3급대상 2년에 1회 실시

리조사 계획을 포함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그리고 2021년 소방청 지침<sup>2)</sup> 「소방활동 자료조사 입력부서 지정 의견조회 결과 알림」에 따르면 [붙임1]과 같이 “소방활동 자료조사 입력부서에 대한 정리 결과” 지침이 시달되었고, 이에 따른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서 정리된 지침 「2022년도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정비계획 알림」<sup>3)</sup>을 통해 [붙임2]와 같이 “소방활동 자료조사 필수 항목 입력담당 부서”에 대해 정리·시행하였다.

따라서 ○○소방서(○○○○○·○○○○○·○○○○○○○○)에서는 「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했고, 「소방활동 자료조사 필수 항목 입력담당 부서」지침에 따라 각 부서는 해당항목을 입력 및 기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고, 특히 ○○○○○에서는 최초 완공대상 건축물에 대한 최초 등록을 통해 자료조사를 위한 기본바탕을 제공하여야 했고, 각 ○○○○○○○ ☆☆·♡♡담당자는 최초 완공대상 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를 규정에 따른 기한을 준수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 후 작성했어야 했고, ○○○○○에서는 자료조사 미 입력 대상에 대해서는 지도·감독을 통해 사후처리에 철저를 기했어야 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#### 가.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 소방활동 자료조사 최초 등록 부적정

○○소방서(○○○○○)에서 담당하는 신축 완공대상 000개소(0000년 완공대상 제외)에 대하여 자료조사 실시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 ○○ ○○○○○ ◆◆◆◆

② 제1항의 대상 중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자료조사는 [소방시설공사업법]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. ※ 2025. 2. 17. 일부개정 이전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

2)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-5762(2021.07.16.)호 『소방활동 자료조사 입력부서 지정 의견조회 결과 알림』

3) 도 방호구조과-1680(2022.01.18.)호 『2022년도 소방활동 자료조사 및 정보카드 정비계획 알림』

담당자가 실시해야 하는 신축 완공대상 소방예방정보시스템상 최초 등록을 0건 미실시 하였다.

#### 나.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 소방활동 최초 자료조사 미실시

○○소방서 각 ○○○○○○○○(☁☁·●●담당자)에서 실시하는 신축 완공대상 최초 자료조사 실시 관련 0건 미실시 하였다.

#### 다.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 소방활동 최초 자료조사 실시 기한 부적정

○○소방서 각 ○○○○○○○○(☁☁·●●담당자)에서 실시하는 신축 완공대상 최초 자료조사 실시 관련 기한 준수 부적정 내역이 00건 확인되었는데, 그 중 00건은 기한을 초과하여 실시하였고, 나머지 0건은 완공검사일 및 사용승인일 이전에 실시하였다.

특히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 최초 자료조사 기한 부적정 실시 관련 ○○○○ ○○○○○에서는 동일한 담당자가 감사 대상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업무에 소홀하였다.

이와 같이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에 대한 최초 자료조사가 미실시됨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선제적인 재난 대비 예방활동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될 우려가 있다.

#### 4. 관련자 의견 및 판단: 의견 없음

#### 5.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

소방◇ ◇◇◇는 0000. 0. 0.부터 0000. 0. 0.까지 ○○소방서 ○○○○○○○○ ○○에서 ☆☆업무를 담당하면서, 0000. 0. 0. 완공된 ♥♥♥♥ ☁-◆●● △△△ △ 0◇ 건축물 외 0건에 대하여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 최초 자료조사와 관련 규정된 기한 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, 특히 ㉹㉹㉹ 건축물(사용승인일:

0000. 0. 0.), 0000. 0. 0.), 0000. 0. 0.), 0000. 0. 0.)에 대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후임 담당자가 자료조사를 지연 실시 하게끔 업무 소홀히 하였다.

소방△ △△△은 0000. 0. 0.부터 0000. 0. 00.까지 00소방서 00000000 00에서 00업무를 담당하면서, 0000. 0. 0. 완공된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(완공검사일: 0000. 0. 0.)에 대하여 건축물 외 0건에 대하여 신축 완공대상 건축물 최초 자료조사와 관련 규정된 기한 내에 자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, 특히 △△△ 건축물(사용승인일: 0000. 0. 0.), 00000000000000000000(사용승인일: 0000. 0. 0.), 00000000000000000000(완공검사일: 0000. 0. 0.), 00000000000000000000(완공검사일: 0000. 0. 0.), 00000000000000000000(완공검사일: 0000. 0. 0.)에 대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후임 담당자가 자료조사를 지연 실시 하게끔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위와 같은 각 행위는 「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」, 제8조(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)를 위반한 것으로 「국가공무원법」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「같은 법」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「(소방)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3조에 따라 “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”에 해당하므로 「주의」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.

## 6. 조치할 사항

가. 00000000은

- ① [통보] 자료조사 관련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자료조사와 신축 완공 건축물에 대한 최초 자료조사가 누락 되지 않도록 지도·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고, 특히 2025. 2. 17. 개정된 「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

정」에 대하여 전 직원이 숙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.

나. ○○○○○○은

- ① [주의] 위 관련자 소방○ ○○○를 「주의」 처분하시길 바랍니다.

다. ○○○○○○은

- ① [주의] 위 관련자 소방○ ○○○을 「주의」 처분하시고, 위 당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
라. 당부사항

「(소방)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라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·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고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.

# 강원특별자치도

## 통보·권고

제 목 공기충전기 안전관리 업무 소홀

기 관 명 ○○소방서

관 계 부 서 ○○○○○○ · ○○○○○○○○

관 련 자

내 용

### 1. 업무 개요

○○소방서(○○○○○○○ · ○○○○○○○○○)에서는 화재, 구조·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 활동 시 활용되는 공기호흡기 및 잠수 용기의 충전을 위한 공기충전기 시설 유지·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

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」 제28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그리고 「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」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[별표7]4)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, 호흡보호

4) [별표 7]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7.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

- ① 공기충전기는 제1호 서식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하되 점검주기와 점검방법은 제조사 권장기준을 따를 수 있다.
- ② 공기충전기는 주요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최소 30분 이상을 가동하여야 하며, 공기충전기 내부는 항상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.

장비란 공기충전기, 공기호흡기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호흡용 압축공기를 제조하거나 저장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, 호흡보호장비 유지·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「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」 5. 공기 품질 검사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충전기에서 제조된 호흡용 공기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공기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, 「강원도 소방관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」<sup>5)</sup>에 따르면 공기충전기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연 2회 상·하반기로 나누어 공기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, 검사방법으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(KFI)에 의뢰하도록 시달하였다.

그리고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기충전기 시설은 매 2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, 「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세부 매뉴얼」 제19조에 따르면 매 6개월 마다 1회 자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를 받으면 도래한 자율검사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고, 모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(KGS)에 의뢰하여 방문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15조 및 「같은 법」 시행령 제12조제3항 [별표 3], 「소방장비 관리법」 시행령 제28조, 「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」 [별표7]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충전실의 운영을 위하여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, 「강원도 소방관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」에서 소방기관 같은 소규모 공기충전시설<sup>6)</sup> 안전관리책임자는 ‘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 이수자’<sup>7)</sup>로 선임 가능하며 공기충전기가 설치된 기관별

---

⑦ 호흡보호장비를 세척·충전·수리 및 불용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「소방장비관리법」 제40조에 따라 구축된 “소방장비관리시스템”에 그 관리 이력을 입력한다.

5) 소방장비회계과-7444(2023.05.18.)호

6) 1시간당 처리능력 60m<sup>3</sup> 이하

로 1명을 선임하도록 하였는데,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서(안전센터)는 교대근무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팀당 1명씩 선임<sup>8)</sup>하도록 강조 시달하였다.

그리고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시행규칙 제17조 [별표15] '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' 및 「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」, 「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세부 매뉴얼」 따르면 공기충전기 안전교육<sup>9)</sup>에 대한 주기 및 교육담당자·대상자를 명시하였다.

따라서 ○○소방서에서는 공기충전기 안전관리를 위한 '안전관리책임자'를 설치된 기관별 팀당 1명씩 선임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했고, 설치된 공기충전기 시설에 대하여 주간점검(매주) 및 자율검사(6개월에 1회), 정기검사(2년에 1회)를 통해 호흡보호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에 힘썼어야 했으며, 공기충전기에서 제조된 호흡용 공기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공기품질 검사를 통해 대원의 호흡 관련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다. 또한 충전원 대상 정기교육(월 1회)과 재해발생 교육(분기 1회), 비상대응훈련(반기 1회)을 통해 전 직원은 긴급사태 시 조치 및 통제요령을 숙달하여야 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#### 가. 공기충전기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특별교육 이수 업무 부적정

○○소방서(○○○○○○○·○○○○○○○○○) 감사 대상 기간 중 각 센터에 설치

7) 한국가스안전공사(KGS) 사이버 교육(1일 6시간) 이수자

8) 최초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,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/ 미선임 시 관계 법령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

9) 제8장 충전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

제34조(교육대상 및 방법)

① 교육대상은 소방기관 소속 충전원으로 하고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.

② 정기교육은 충전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충전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충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

③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·비치한다.

④ 교육과정은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,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부총괄자는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훈련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장려한다.

제40조(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)

①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표 1과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 1회 이상 교육 시에 실시한다.

된 공기충전기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특별교육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이수자로 선임하지 않고 부적정한 자격으로 선임하였다.

그 결과 외부 기관 지도 점검을 통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을 수 있고, 근본적으로는 공기충전기 시설 안전관리책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.

#### 나. 공기충전기 시설 안전교육 업무 소홀

○○소방서(○○○○○·○○○○○○○○)는 감사 대상 기간 중 공기충전기 시설에 대한 충전원 교육(월간), 재해발생 교육(분기), 비상대응훈련(반기)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센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센터에서 모든 교육 및 훈련에 부적정하게 실시하였다.

이는 ○○○○○ 소명을 통해 공기충전시설 담당자인 ☆☆☆☆이 2023년 5월 소방본부에서 시달한 「강원도 소방관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」<sup>10)</sup>을 각 ♡ ♡ 및 ☁☁☁에 전파하지 않음으로 인해 해당 기간 동안 ◆◆◆◆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미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.

다만 일부 교육 및 훈련을 성실하게 수행한 부서(●●●●)는 공기충전기 시설 안전교육에 실시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인지<sup>11)</sup> 후 실시하였다.

그 결과 각 시기별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여 공기충전기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 직원들의 의식함양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,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.

#### 4. 관련자 의견 및 판단: 의견 없음

#### 5.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: 판단 없음

10) 소방장비회계과-7444(2023.05.18.)호

11) 타서에서 전입온 신규 전입자들을 통한 인지 및 부서장의 실시 의지로 해석

## 6. 조치할 사항

### 가. ○○○○○○은

- ① [통보] 「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」 및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교육·훈련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·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아울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나. ○○○○○(○○○○○○○○)은

- ① [권고] 2023년 5월 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에서 시달한 「강원도 소방관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」<sup>12)</sup>에 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어 공기호흡기 시설뿐 아니라 전반적인 호흡보호장비 관리 기준을 재정립하여 일선 소방서에서 충분히 숙지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--

12) 소방장비회계과-7444(2023.05.18.)호